

강원관광대학 재입학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제28조에 의한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 (재입학대상)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 (재입학의 제한) ①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징계제적자.
2. 이중학적자.
3. 학사경고제적자.

제4조 (재입학 학년) ① 재입학은 제적당시와 동일한 계열(과) 및 동일 학년에 재입학하여야 한다.

② 평균평점이 1.0미만인자가 재입학을 할 경우에는 종전학기의 성적을 삭제하고 종전학기로 재입학을 할 수 있다.

제5조 (재입학시기) 재입학 신청시기는 학장이 정한 등록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재입학 신청기간을 맞추지 못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 부터 4주 이내에 재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.

제6조 (재입학 절차) ① 재입학 대상자 중 재입학 희망자는 교무처에서 재입학원서를 교부 받아 소속계열(과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재입학 희망자를 면담한 후 그 사유가 인정되면 수학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 회의를 거쳐 추천서를 작성하고, 재입학원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재입학자는 학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재입학을 허가한다.

제7조 (재입학자의 학점 인정)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본 대학의 재학당시에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과(계열)특성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8조 (재입학 등록)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입학금 취소 할 수 있다. 단, 입학금은 면제한다.

제9조 (제출서류) 재입학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재입학원 1부.
2. 성적증명서 1부.
3. 학과 교수회의 추천서 1부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